

제241회 거창군의의회 제1차 정례회  
(2019. 6. 10. ~ 6. 24.)

#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 2건, 규칙 1건)

거창군의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9-73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9-74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9
2019-75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8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73
----------	---------

발의일자	2019. 5. .
발 의 자	이재운, 이홍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의원 (인)

1. 제안이유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재난예방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 나. 지원 신청서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경제교통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5. 17. ~ 5. 2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예방하여”를 “예방하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를”을 “제3조 각 호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에 따른”을 “제32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범위)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장치 설치
3.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자재 교체
5.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제4조 중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u>예방하여</u>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원대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거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화재취약계층"이라 한다)가 거주하는 주택에 <u>소방시설 설치를</u>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li> <li>2. 「장애인복지법」 <u>제2조에 따른</u> 장애인</li> <li>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li> <li>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li> <li>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li> <li>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u>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u>예방하고</u>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원대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거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화재취약계층"이라 한다)가 거주하는 주택에 <u>제3조 각 호의 사업을</u>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li> <li>2. 「장애인복지법」 <u>제32조에 따라 등록</u>된 장애인</li> <li>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li> <li>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li> <li>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li> <li>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p>

제3조(지원범위)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지원범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3조(지원범위)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장치 설치
3.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자재 교체
5.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10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표주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74
----------	---------

발의일자	2019. 5. .
발 의 자	표주숙, 이홍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의원 (인)

## 1. 제안이유

○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다. 정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라. 빈집 정비 대상 및 지원 대상 등 규정(안 제6조,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불가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축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5. 17. ~ 5. 2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6.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비 대상)** ① 빈집 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 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 제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7. 23.]9

#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75
----------	---------

제출일자	2019. 6. .
제 출 자	박수자, 이홍희, 김향란,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의원 (인)

### 1. 제안이유

- 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됨에 따라
- 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규칙 제명 변경
  -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 ⇒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 나.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 (안 제1조 ~ 안 제3조)
- 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심사기준, 회의 (안 제4조 ~ 안 제6조)
- 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및 여비,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안 제7조 ~ 안 9조)
- 마. 출장계획서 제출, 출장보고서 제출 (안 10조 ~ 안 11조)
- 바. 예산 편성·집행, 사후관리 등 (안 12조 ~ 안 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456호(2019.2.11.)
  - 2)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타 사항
  - 1) 입법예고 : 2019. 5. 28. ~ 6. 3.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거창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른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위원을 새로 위촉 한다.

⑤ 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집행)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행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명	비고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